

[수정전]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해당 분기 (24.1Q)	전년 동기 (23.1Q)	증 감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210.5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210.5	—

* 지급여력비율은 6월말 공시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IV. 자본의 적정성

4-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은 6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VI. 위험관리

비례성원칙 적용현황에 관한 사항

* K-ICS 지급여력비율은 6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수정후]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해당 분기 (24.1Q)	전년 동기 (23.1Q)	증 감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229.6	210.5	19.1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229.6	210.5	19.1

4-2. 지급여력비율

4-2-1)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써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은 RBC제도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변경되었습니다.

RBC와 K-ICS의 주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요구자본의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고, 위험계수 방식에서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경제 환경에 따른 위험을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하는 점에 있습니다.

□ 산출방법 개요

K-ICS 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 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기본 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시장, 신용,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다음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text{기본요구자본} = \sqrt{\sum_i \sum_j \text{상관계수}_{ij} \times \text{개별 위험액}_i \times \text{개별 위험액}_j} + \text{운영위험액}$$

- 상관계수 $_{ij}$ 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생명·장기손해	일반손해	시장	신용
생명·장기손해	1	-	-	-
일반손해	0	1	-	-
시장	0.25	0.25	1	-
신용	0.25	0.25	0.25	1

[지급여력비율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4.1Q)	당분기-1분기 (23.4Q)	당분기-2분기 (23.3Q)
경과 조치 전	지급여력비율	229.6	233.1	214.5
	지급여력금액	199,144	195,752	192,608
	지급여력기준금액	86,717	83,962	89,780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229.6	233.1	214.5
	지급여력금액	199,144	195,752	192,608
	지급여력기준금액	86,717	83,962	89,780

* 당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 주요변동요인 : 부채 할인을 제도 변화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로 비율은 소폭 하락함

[건전성감독기준 요약 재무상태표]

新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합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4.1Q)	당분기-1분기 (23.4Q)	당분기-2분기 (23.3Q)
[운용자산]	604,025	598,251	545,727
현금및예치금	10,456	14,166	8,887
유가증권	359,445	342,689	318,7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03,907	94,943	91,58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38,226	231,638	212,094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2,790	11,707	12,98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522	4,400	2,126
대출채권	209,282	216,663	194,276
- 개인대출	13,679	13,876	15,012
- 기업대출	151,433	157,263	138,122
- 보험계약대출 ^{주1)}	44,169	45,524	41,142
부동산	24,842	24,733	23,783
[비운용자산]	30,121	32,604	30,739
재보험자산	15,094	15,768	15,283
기타비운용자산	15,026	16,836	15,457
[특별계정자산 ^{주2)}	12,941	12,867	12,132
실적배당형퇴직연금	196	178	161
변액보험	12,745	12,689	11,971
자산총계	647,087	643,722	588,598
[부채]	453,377	450,445	401,384
책임준비금	355,414	359,177	310,776
- 현행추정부채	321,292	326,120	273,116
1. 생명-장기손해보험	267,963	272,123	217,074
2. 일반손해보험	53,329	53,997	56,042
- 위험마진	34,121	33,057	37,660
1. 생명-장기손해보험	32,333	31,299	35,849
2. 일반손해보험	1,788	1,758	1,811
기타부채	85,298	78,666	78,655
특별계정부채	12,665	12,601	11,953
- 책임준비금	12,612	12,522	11,907
- 기타부채	53	80	45
- 일반계정미지급금	101	101	99
부채총계	453,377	450,445	401,384
[자본]	193,710	193,277	187,214
1. 보통주	354	354	354
2.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398	398	398
3. 이익잉여금	106,802	104,142	100,213
4. 자본조정	-1,526	-1,526	-1,526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871	-1,464	1,675
6. 조정준비금	95,553	91,373	86,099
자본총계	193,710	193,277	187,214
부채 및 자본 총계	647,087	643,722	588,598

주1) 자산운용 측면의 일관성, 리스크 측정의 적정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험계약 대출을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주2) 상품구조 및 성격이 다른 보험상품의 손익보조를 차단하고, 투자수지의 명확한 귀속과 대상자산의 건전성유지의 목적으로 특별계정자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

* 주요변동요인 : 금리 상승 및 기타 요인(부채 할인을 제도 변화, 당기 손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 자산은 소폭 증가함

4-2-2)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2023년 지급여력제도의 변경(RBC→K-ICS)에 따라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동을 완화하고자 금융 당국은 최대 2032년까지 K-ICS 기준 일부를 완화(이하 '경과조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는 모든 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회사가 선택 적용하는 조치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공통적용에 한하여 경과조치가 적용 되고 있으며, 선택적용 경과조치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경과조치의 종류		적용여부
공통적용	가용자본	제도시행前 기발행자본증권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TFI)		○
	업무보고서	보고 및 공시기한 연장		○
선택적용	가용자본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TAC)		X
	요구자본	신규도입 위험	신규 보험위험 전진적 인식(TIR)	X
		기존측정 위험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ER)	X
	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IRR)		X	
K-ICS비율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		X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세부]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4.1Q)	당분기-1분기 (23.4Q)	당분기-2분기 (23.3Q)
가. 지급여력금액 (기본자본 + 보완자본)	199,144	195,752	192,608
기본자본	93,971	95,462	93,576
보완자본	105,173	100,290	99,032
Ⅰ.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 (1+2+3+4+5+6)	193,710	193,277	187,214
1. 보통주	354	354	354
2.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398	398	398
3. 이익잉여금	106,802	104,142	100,213
4. 자본조정	-1,526	-1,526	-1,526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871	-1,464	1,675
6. 조정준비금	95,553	91,373	86,099
Ⅱ.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항목 (지급이 예정된 추주배당액 등)	562	3,826	803
Ⅲ.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등)	99,177	93,990	92,835
나. 지급여력기준금액 (Ⅰ-Ⅱ+Ⅲ)	86,717	83,962	89,780

I. 기본요구자본	114,997	111,315	118,570
- 분산효과 : (1+2+3+4+5) - I	45,207	43,884	42,990
1.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1,119	78,551	89,754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13,594	13,259	13,452
3. 시장위험액	35,396	32,902	28,595
4. 신용위험액	23,730	24,227	23,653
5. 운영위험액	6,365	6,259	6,106
II. 법인세조정액	29,024	28,104	29,508
III. 기타 요구자본(1+2+3)	743	750	718
1.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316	316	303
2.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대응치	90	97	78
3.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337	337	337
다. 지급여력비율 : 가 ÷ 나 × 100	229.6	233.1	214.5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1) 공통적용 경과조치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29.6	229.6
지급여력금액	19,914,356	19,914,356
기본자본	9,397,090	9,436,929
보완자본	10,517,266	10,477,427
보완자본 한도 적용 전	917,784	278,410
보완자본 한도	4,335,834	4,335,834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9,599,482	9,599,482
(기발행 신종자본증권)	39,839	
(기발행 후순위채무)	599,535	
지급여력기준금액	8,671,668	8,671,668

(2) 선택적용 경과조치 관련

①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 당사는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②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

* 당사는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③ 주식위험 경과조치 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

* 당사는 주식위험(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4-2-3)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요 변동 요인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4.1Q)	직전년도 결산 (23.4Q)	전전년도 결산 (22.4Q)
경 과 조 치 전	지급여력비율	229.6	233.1	—
	지급여력금액	199,144	195,752	—
	지급여력기준금액	86,717	83,962	—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 당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 * 주요변동요인 : 부채 할인을 제도 변화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로 비율은 소폭 하락함

VI. 위험관리

□ 비례성원칙 적용현황에 관한 사항

1) 개요

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한 원칙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I.5. 비례성원칙"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적용현황

- ① 적용항목 :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 시 간편법 적용
- ② 적용절차 : FY'23 제57기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비례성원칙 충족여부 입증결과를 보고 및 제출
- ③ 적용기간 : 최초 적용일로부터 최대 3년
- ④ 적용방법 : 해당 종속회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를 요구자본 대용치로 적용
- ⑤ 적용대상 및 결과

(기준 : '24.3월말, 단위: 억원)

구분	종속회사명	소재지	최초 적용일	비중요성 기준		총자산	요구자본 (총자산의 8%)
				규모 ^{주1)}	리스크 ^{주2)}		
1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한국	'23.6월말	충족	충족	212	17
2	DB CAS손해사정(주)	한국				191	15
3	DB CSI손해사정(주)	한국				163	13
4	DB CNS자동차손해사정(주)	한국				131	10
5	DB MnS(주)	한국				273	22
6	DB ADVISORY AMERICA, LTD.	미국				15	1
7	John Mullen & Company, Inc.	미국				145	12

주1) 규모기준 :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그룹기준 총자산의 1% 미만 여부

주2) 리스크기준 :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 여부
(장외파생상품거래는 3% 미만 여부)

3) 관리방법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여부를 다시 입증할 계획입니다.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